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관리 의무 신설 〉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19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2201519)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관리 의무 신설 (안 제35조, 안 제85조 및 안 제91조)	2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220151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정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07. 09.
3. 회 부 일 : 2024. 07.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차량내 범죄 및 사고상황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 영상기록물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음.

최근, 쏘카 및 그린카 등 자동차대여에 대한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사고 및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나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 의무화 규정이 없어 사고 등의 발생 시 관계 기관이 해당 대여사업자에게 사고처리를 위하여 영상기록을 요구하여도 제출의무가 없어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인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운송사업자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도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다양한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등).

Ⅲ. 검토의견

1.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관리 의무 신설

(안 제35조, 안 제85조 및 안 제91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준용 규정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규정을 추가하고 면허취소 및 벌칙 규정에도 이를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준용 규정)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u>사고 시의 조치</u>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u>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u> 및 제19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35조(준용 규정) ----- ----- ----- ----- ----- <u>사고 시의 조치, 영상기록장치의 설치</u> ----- ----- ----- <u>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u> , 제19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u>제27조의3을</u> -----.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 ----- ----- ----- ----- ----- ----- -----

현행	개정안
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3. (생략) 23의2.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3의3.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24. ~ 41. (생략) ② ~ ④ (생략)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한 자 3. 제2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4. 제27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	----- ----- ----- ----- ----- ----- 1. ~ 23. (현행과 같음) 23의2. 제27조의3제1항(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3의3. 제27조의3제7항(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4. ~ 4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1조(벌칙) ----- ----- -----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의3제3항(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3. 제27조의3제4항(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4. 제27조의3제6항(제35조에서 준

현행	개정안
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5. ~ 7. (생략)	<u>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 ----- 5. ~ 7.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7조의3은 운송사업자¹⁾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노선 및 전세 버스)²⁾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이하 “주요교통시설”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정하여진 사업구역(이하 “소속 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인접(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하고 소속 사업구역에서 승차한 여객을 그 주요교통시설에 하차시킨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소속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 각 목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이러한 영상기록장치는 ①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③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외에는 영상기록의 이용이나 다른 자에게 제공이 금지되어 있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량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 등 >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①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승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하는 행위
- ④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관리 및 영상기록의 이용·제공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 ⑥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방법, 제4항에 따른 영상기록의 제공 및 그 밖에 영상기록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렌터카”)에 이러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의무가 없음.

최근 쏘카 및 그린카 등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활용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사고 및 범죄도 늘어났으나³⁾, 관계 기관이 해당 대여사업자에게 사고처리를 위하여 영상기록을 요구하여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의무와 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는바,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인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현행법 제3장(제28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⁴⁾’을 말하는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하여 등록·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대여약관 등을 규정하면서,

법 제35조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사고 시의 조치 등’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⁵⁾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법 제35조 준용규정에 법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3) 렌터카 교통사고 : 9.9천건('19) → 10천건('20) → 10천건('21) → 9.8천건('22) → 9.5천건('23)
자료 : 국토교통부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등)을 자동차대여사업에도 준용하도록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우 교통사고 상황과악과 후속 조치, 차량 내 범죄 예방 등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 제27조의3제3항은 운송사업자가 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②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하는 행위, ③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 기록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현행법 제91조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안 제35조는 법 제27조의3제3항을 준용하고 있으며, 안 제91조제2호에서는 안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라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는 영상기록장치를 관리할 운수종사자가 항시 탑승하고 있으며, 주로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렌터카는 임차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운행경로에 제한이 없음.

즉, 렌터카는 임차인이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조작이 가능한 환경으로 개정안과 같이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제27조의3제3항의 금지행위 등을 할 경우 운송사업자가 이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법령에 따라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의 경우 대중교통⁶⁾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설치 의무화가 규정된 것으로,

현행법에서 택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은 자율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렌터카는 노선버스 등의 대중교통보다는 택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과 오히려 유사한 사업인바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버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은 아니나, 전세버스는 주로 회사 등의 출퇴근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바, 이 경우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 대중교통과 유사함을 인정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셋째, 임차인이 이용목적에 따라 직접 운행하는 렌터카의 특성상 영상 기록장치의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경우, 임차인의 목적지,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우려가 있고, 관리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국토교통부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재 렌터카 업체는 자율적으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으며, 차량 외부를 촬영하는 형태임.

< 렌터카 상위 5개 업체 블랙박스 설치현황 >

구분	등록대수	장착대수	장착비율
롯데렌탈(주)	260,756	260,756	100%
에스케이렌터카(주)	164,043	123,032	75%
현대캐피탈(주)	154,111	120,206	78%
SK네트웍스(주)	45,559	34,169	75%
케이비캐비탈(주)	46,978	46,978	100%
합계	671,447	585,141	87%

*자료: 국토교통부 ('22.12.기준,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다. 관련 기관 등 의견

(국토교통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의무 적용 대상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농어촌·마을·시외 버스),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한정하고 있으며, 택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은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자율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의무사항은 아님.

임차인의 이용목적에 따라 직접 운행하는 렌터카의 특성 상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경우, 임차인의 목적지,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우려가 있고, 관리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

또한, 장치를 관리할 수 있는 운전종사자가 있는 버스 등과 달리 렌터카는 임차인이 영상기록장치 임의조작이 가능한 환경으로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임차인의 촬영장치 훼손, 기록중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는 신중검토가 필요함.

(서울·경기·강원 자동차대여사업조합, 렌터카사업조합 연합회)

개정안은 차량을 직접점유하여 운행하는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 및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침해함. 아울러 소수의 범죄 입증 등을 위해 범죄 등과 상관없는 다수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목적과 수단, 법익 침해가 현저히 부정적하여 과잉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함.

자동차 운행과 관계가 없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개인 사생활에 대한 영상기록 의무화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적용하여 과도한 사업자 부담을 유발함.

(서울시 종로구, 용산구 등)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의무화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소지 등이 우려되는바, 임차인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득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광진구, 동대문구 등)

쏘카 및 그린카 등 자동차를 대여하는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사고 및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나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운송사업자와는 달리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관리의 의무화가 없어 사고 및 범죄의 예방과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에 자동차대여사업자 또한 차량내 범죄 및 사고상황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관리의 의무화가 필요함.

(서울시 은평구, 강서구 등)

대여사업자에게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가 의무화될 경우 임차인의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으며,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여러 제반 사항에 따른 대여료 상승 등의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4